



새 gTLD 프로그램

상표 정보센터
(예전의 IP 정보센터)

내용 요약

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목적은 상표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와 세계보호상표목록(GPML)에 관한 실행권고팀(IRT)의 제안에 대한 여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열거된 내용은 시드니, 뉴욕 및 런던에서 개최된 공개 회의에서 수렴된 정보센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요청 감시 및 우선등록 서비스에 대한 특정 언급 포함)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된 내용은 ICANN 의 공개 포럼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센터에 관한 의견의 요약 내용입니다. 정보센터 제안에 관한 의견 다음에는 공개 회의 및 ICANN 의 공개 포럼에서 수렴된 GPML(정보센터 제안과 통합되었음)에 관한 의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RT 최종 보고서(2009.5.29~2009.7.7)와 관련하여 ICANN의 공개 포럼에 제출된 의견의 전문은 <http://forum.icann.org/lists/irt-final-report/>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뉴욕 및 런던에서 열린 공개 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의 전체 목록은 이 문서에 대한 비교 문서로 게시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된 의견 다음에는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제안과 의견, 그리고 그 이해관계 균형에 관한 분석 및 토론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된 상표 정보센터의 절차는 현재 GNSO 가 심의 중이며, 신청자 가이드북 버전 3 과 함께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요점:

정보센터:

- 정보센터에 등록해도 상표권이 생성되거나 확대되지 않으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권리의 제한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 채택될 경우 정보센터는 ICANN 과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ICANN 이 운영해서도 안 되며 ICANN 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정보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보센터에 상표를 등록하는 비용은 어떤 당사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여러 당사자들 간에 비용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 등록기구/등록기관과 상호 작용에 관련된 요건을 비롯하여 수행 요건이 도메인 이름 등록 적시성이나 등록기구/등록기관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GPML:

- 결국, 이 특정 RPM에 대한 의견은 GPML이 도움이 되기 보다는 정보센터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한 의견들은 해당 기준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gTLD 시스템과 RPM에 대한 상표 보유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GPML이 상표권의 확대, 즉 등록 관할 지역에서 상표권을 확대하고, 인터넷의 세계적 특성을 감안할 때 등록되지 않은 관할 지역에서도 권리를 생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견 요약

IP 정보센터

시드니

개요

IP 정보센터는 GPML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GPML 적격성이 없는 다른 형태의 상표도 포함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새 gTLD 등록기구를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핵심 기능 중 하나로서, 상표 소유자가 제출하는 데이터는 매년 검증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책임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표 소유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상표 소유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소유자들이며, 이들 데이터는 IP 정보센터의 특정 설립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라이선싱과 서브라이선싱 과정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IP 정보센터는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된 별도 아웃소싱업체(ICANN과 기존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는 제외)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확장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이 과중해서는 안 되며, IP 정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소유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M. Wong.*

보호 및 감독

WIPO는 IP 정보센터의 예상되는 중심 역할을 감안할 때 ICANN의 밀착 감시와 적절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독점권이 부여되면 그 역할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 역할들을 상이한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방법,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은 한 업체, 데이터 검증은 다른 업체, IP 요청 관련 역할은 또 제 3의 업체에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 Min.*

재무적 고려사항

누가 IP 정보센터에 소요 자금지원을 납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전적으로 상표 소유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되며, DNS의 모든 해당 관계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E. Min. IP 정보센터를 강력하게 만들자는 (이미 존재하는 등록 하부조직만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자 - 고비용이 될 것으로 보임) 측과 상표 보유자들을 위해 저렴하게 만들자는 측의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J. Buchanan. IRT는 자금 지원 모델을 명시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정보센터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과정이 진행 중이고 입찰자들이 일부 자금 지원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모델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IRT는 비용을 분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ICANN이 일부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 등 다른 아이디어도 논의되었지만, IRT 보고서에는 합의점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J. Neuman.

포함할 권리

나는 등록 상표의 범주에 출처와 품질 명칭도 기재한다는 근거가 어떻게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에 따라 국적을 보유한 다양한 물건의 국제적 가치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록 상표가 다양한 국가 체제 하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보호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와 같은 부당 등록 방지 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메커니즘 체계가 적고 우리는 상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정의에 의하여 그것이 이 같은 수단을 갖지 않습니다. A. Abril i Abril. A. Abril | Abril 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것은 보고서에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일 수 있습니다. IRT는 정보센터가 이들 모든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수단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즉, 등록기구가 출처 지정을 기준으로 상표에 일종의 선호도를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정보센터는 해당 정보의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IRT는 요소들을 착수하는 모든 TLD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등록기구들이 그러한 상표 유형에 선호도를 부여한다는 선택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단일 정보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자는 의도입니다. J. Neuman. 정보센터에 있는 미등록 상표와 관련하여, 그 의도는 데이터베이스가 RPM 실행을 위해 등록기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기구가 미등록 상표를 인정하고 싶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정보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 Neuman.

사용 의도를 기준으로 상표 등록

많은 상표들이 “사용 의도”를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상표이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그리고 국가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적 효력을 가진 상표라면 상표에 포함시킬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다른 국가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국가에서 사용 의도를 기준으로 등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IP 정보센터의 관점에서는 귀하가 상표권 보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M. Wong.

IP 정보센터: 기존 상표법의 확대에 관한 우려사항

우리가 (기존의 국내 상표권 집행 범위를 상표 보유자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국제적 권리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법률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존 상표 보유자뿐만 아니라 도메인 투기자들에게 많은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avid. B. 이 메커니즘은 투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한 국가 상표 등록기관이 어디이든지 간에 정보센터의 검증 기능은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M. Wong. 정보센터는 단순히 효율성 메커니즘이며, 이전에 수행되지 않았던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성공했던 모델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그것을 하나의 중심적 위치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J.S. Evans.

IP 정보센터를 지지함

eNOM은 IP 정보센터를 지지합니다. 정보센터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로서, 개별 등록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할 필요를 없애주기 때문에 상표 보유자들의 비용을 절약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책 수립 과정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이며 등록기구들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남용에 대비한 보호책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R. Tindal.*

IP 정보센터는 문제가 있음

이것은 많은 TLD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CANN이 강하게 권장하는 획일적 접근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IDN TLD에게는 글로벌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David K.*

IP 정보센터 – 언어

정보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언어를 취급할 것이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정보센터 운영업체는 많은 다른 언어로 된 글로벌 인터넷, 특히 IDN gTLD 작업을 어떻게 처리하여 수용할까요? 개발도상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IDN gTLD 운영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용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고, 만약 그로 인하여 비영어권 언어에 대하여 역진세가 부과된다면 인터넷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만들고자 하는 IDN gTLD의 전체적 목적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R. McKinnon.*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대응해야 할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의도하는 바는 정보센터가 다양한 언어로 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IDN 등록기구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비용을 등록기구에 전가하지 않는 것이며, 등록기구 공간에 있어서의 경쟁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J. Neuman.*

기존 감시 서비스

IP 정보센터가 기존 업무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요 – 즉, 전 세계에 있는 기존의 감시 서비스와 다양한 언어로 된 다른 정보들이 대규모 상표 소유자들에게 상표가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되고 있다는 점을 통지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K. Kleiman.*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주장하는 권리를 보유하였음을 실제로 검증하고 확인해주는 기존 서비스는 없습니다. IP 정보센터가 기존 감시 서비스를 대체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J. Neuman.*

뉴욕

개요

IP 정보센터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갖추고 저렴하고 효율적 데이터베이스 확보 방안, 즉 모든 신규 gTLD 등록기구와 가능한 등록기관들이 GPML(Globally Protected Marks List), IP 요청 서비스 및 URS의 실행과 관련하여 상호작용하는 중심적 업체를 만들자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등록기구나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정보센터(현재 ICANN과 직접 계약 관계를 갖지 않는 아웃소싱 업체가 운영함)에 데이터를 유료로 제출합니다. IP 정보센터는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은 제출된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고, 상표 소유자는 ICANN에게 데이터를 IP 정보센터로 서브라이선싱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모든 ICANN 등록기구와 등록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IP 정보센터는 강력하고 (확장성 있고 다양한 유형의 권리 기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안전하고 유연하고 신속해야 하며, 상표 소유자에게 합리적 비용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K. Rosette.*

IP 정보센터 – ICANN 의 사명을 벗어남

IP 정보센터는 ICANN 을 글로벌 IP 권리 보호 관리자로 만들며 이는 DNS 의 기술적 관리자라는 ICANN 의 사명을 훨씬 벗어나는 것입니다. IP 정보센터가 설립되면 많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K. Kleiman.*

IP 정보센터 – 지지함

정보센터는 소규모 등록기구들이 해당 영업 지역에 맞도록 조정된 정책을 실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A. Van Couvering.*

IP 정보센터 – 공개 접근 허용

정보센터는 공개적 접근이 허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ICANN 의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ICANN 은 대중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개 접근을 허용하면 상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면 될 것입니다. *T. Barrett.*

IP 정보센터 공급업체

ICANN 은 가장 혁신적 솔루션 범위를 구하기 위해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ICANN 업체들이 IP 정보센터 공급업체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유명한 등록기관이나 등록기구에서 혁신적 솔루션이 도출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문제는 계약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T. Barrett.*

런던

IP 정보센터 – 역할

ICANN 이 정보센터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한 개 이상의 정보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Demand Media 는 믿습니다. Demand Media 는 한 개 또는 다수의 (지역)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솔루션을 지지합니다. *R. Tindal.*

WIPO 는 정보센터에 부여하기로 계획된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책과 ICANN 의 일착 감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역할을 차별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들이 정보센터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보센터 설립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등록기구와 등록기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민은주.

(.eu 와 .asia 에서 precursor 를 갖는 것)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즉, 모든 신규 gTLD 등록기구와 해당 등록기관들이 GPML, 사전 실시 IP 요청 서비스 및 URS 와 관련하여 상호작용하는 중심적 업체입니다. 검증을 위해 정보가 수집되고, 등록된 권리 및 미등록된 권리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상표 소유자들이 직접 또는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기구를 통하여 제출합니다. 데이터는 등록 초기 및 그 후에는 매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유권은 상표 소유자가 보유합니다. 정보센터는 ICANN 과 직접적 계약 관계를 갖지 않는 아웃소싱 업체로서 하루 24 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확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강력한 최신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표준 형식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상표 소유자들은 자신의 전체 상표 포트폴리오를 정보센터에 둘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은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D. Taylor.*

IP 정보센터 – 이의 제기

비상업 사용자 지지 그룹은 정보센터가 ICANN 의 사명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국제 상표국이 향유하는 특권을 ICANN 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향후에 데이터베이스는 남용될 수 있고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존중하지만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면 일관성 및 균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T 보고서에는 ICANN 이 모든 상표 소유자가 등재되도록 보장하는 방법 또는 유효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상표 등록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시장이 이 정보센터의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K. Komaitis. IRT 는 일관성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단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다수의 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일관성에 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K. Komaitis 외 대응한 F. Vayra 의 의견. 다수의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면 표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새 gTLD 프로그램이 지연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하나의 정보센터를 갖고 시작된다면, 커뮤니티가 정보센터의 경쟁 시장을 원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원 미상. 단일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초기 계획이라는 언급은 IRT 보고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K. Komaitis.

IRT 재무 보고 여론

IP 정보센터 – 국제적 상표 체계에 대한 영향. 제안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등록상표 시스템을 향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국제 조약 수준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시기상조입니다. 오프라인 상표법에 포함된 방어 및 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V. McEvedy(2009.7.7).

IP 정보센터 – 확장 불가능할 수 있음.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누가 이를 운영할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BBC(2009.7.6). 이론상으로는 유용하지만 모든 gTLD 에게 실용적이지는 않으며, 위임된 단일 정보센터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FA(2009.7.6).

IP 정보센터는 ICANN 이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백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것은 ICANN 의 범위와 권한 밖의 일입니다. NCUC 는 ICANN 이 애매한 상표권에 관한 거대한 획일적 단일 데이터베이스로서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ICANN 이 정상 궤도를 크게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내용에 관하여 브랜드 소유자들 간에 도출된 합의가 없습니다. ICANN 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국가 상표국이 IP 정보센터 설립에 관한 노력을 주도할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으며 국내법을 근거로 적절한 이해관계 균형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민간 및/또는 상표국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새 gTLD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들을 정보센터에 추가해야 합니다. NCUC(2009.7.7). ALAC(2009.7.7).

IP 정보센터 – 상표법의 범위를 벗어남. 상표 등록자들은 상표를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우선등록권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최소한 전세계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RPM 이 상표를 보호해야 하지만 도메인 이름을 할당해서는 안 되며, 도메인 이름을 할당하는 RPM 은 거절해야 합니다. ALAC(2009.7.7).

IP 정보 센터 – 보호 및 감독. 계획 중인 IP 정보센터의 역할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IRT는 IP 정보센터의 데이터는 IP 정보센터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다는 초안 보고서의 표현을 왜 최종 보고서에서 누락시켰습니까? 제출되는 데이터가 정보센터의 정확히 정의된 목표를 위해 계약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센터의 역할은 약정된 역할을 초월하는 것을 견제하는 조치를 포함하기 위해 세심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남용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이 수반됩니다. 정보센터가 보유한 데이터의 사용 가능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WIPO AMC(2009.6.19). Regions(2009.7.3).* IRT 보고서는 데이터 보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센터 데이터 이력은 유지 보관되어야 하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RyC(2009.7.6).* 데이터는 명확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Playboy(2009.7.6).* *Verizon(2009.7.7).* 정보센터는 비영리적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Verizon(2009.7.7).*

IP 정보센터 –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 문제. IP 정보센터 방안을 이행하려면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그러한 문제들의 예를 들면, 손해배상 및 출처와 자금 지원, 사전 실시 활동만이 아닌 지속적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에 등록기구들에 의한 업데이트 점검 빈도, 정보센터가 SLA나 등록기구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등록기구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 등입니다. *RyC(2009.7.6).*

IP 정보센터 – 역할 차별화. IP 정보센터 서비스는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역할 차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업무를,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 데이터 제공 외에 사전 실시 IP 요청 및 URS에 있어서 정보센터의 역할은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WIPO AMC(2009.6.19).* *Verizon(2009.7.7).* IP 정보센터의 구체적 기능을 (검증, 데이터 관리 및 보관, 보조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분할하고 한 업체 이상의 참가자가 별도 구성요소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해야 합니다. *MarkMonitor(2009.7.2).*

IP 정보센터 – 단계적 실행. 남용 사건의 대부분은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매우 큰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상표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남용 소지가 가장 큰 상표부터 그리고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MarkMonitor(2009.7.2).*

IP 정보센터 – 보류. IP 정보센터를 보류하고 입증 책임을 새 gTLD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Unilever(2009.7.1).*

IP 정보센터 – 남용 및 기타 우려사항. IP 정보센터 모델은 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역할의 일부를 유사한 상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한 개 이상의 기존 조직들이 취급해야 합니다. 상표 검증은 별도 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S. Donahay(2009.7.1).*

IP 정보센터 – 지지. IP 정보센터는 건전한 메커니즘이고 RPM 채택을 위한 IRT의 모든 벤치마크 기준을 충족합니다. ICANN은 이 RPM을 신속히 채택하고 이를 위해 RFP 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일 업체를 활용하더라도 그 업체는 제공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게 될 것이므로 우려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가격 정책과 운영 방식은 경쟁 과정을 통하여 5년 기간 단위로 지정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증된

데이터베이스이고 데이터 사용 방법에 관한 정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NOM(2009. 6. 22)*, *Wrays(2009.7.6)*, *INTA IC(2009.7.6)*. IP 정보센터의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는 상표 소유자의 상표 보호,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과 관련된 비용과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Microsoft(2009.7.2)*, *MARQUES(2009.7.3)*, *Yahoo! (2009.7.6)*, *Com Laude(2009.7.3)*. IP 정보센터는 필수적이어야 하며, 모든 신규 “개설” gTLD 운영자들은 IP 정보센터와 상호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Regions(2009.7.3)*, *K. Grabienski(2009.7.4)*, *Experian(2009.7.6)*, *ECTA(2009.7.6)*, *Time Warner(2009.7.6)*, *PMI(2009.7.6)*. 여러 가지 방법으로 IP 정보센터는 가장 중요한 IRT 권고안입니다. 신청자 가이드북에는 (1) 등록기구 참가는 필수적이고, (2) IRT 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새 gTLD 의 전체 범위에 걸쳐 범용 2 차 수준의 사전 실시 RPM 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고, 제 3 자 권리의 제출 및 검증에 의존하지 않는 RPM 은 신청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사후 위임 실행 메커니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COA(2009.7.6)*, *IPC(2009.7.6)*, *SIIA(2009.7.6)*. 범위와 용도의 한계를 주의하여 설정한다면 제안 내용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등록상표로 한정되어야 하고, 미등록 상표, 지리적 이름, 성(family name)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표의 관련 시장과 지리적 범위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 ICA 가 반대하는 URS 또는 GPML 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자가 자신이 등록할 도메인 이름이 IP 정보센터에 있는 상표와 일치함을 인지할 경우 등록 전제조건으로 진술 및 보증을 하는 추가적 절차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하고 불리하고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등록자에게는 그들의 도메인이 UDRP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통지를 하고 도메인 등록 및 갱신 시에 등록기관과 계약할 때 이를 준수한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합니다. *ICA(2009.7.7)*.

IP 정보센터 – 지지하지만 비용과 구조에 관한 우려가 있음. IP 정보센터 제안은 고무적이지만 비용과 조직 구조에 관한 우려도 있습니다. *IHG(2009.7.2)*. 신규 등록기구들이 기존의 우선등록 기간 또는 새로운 정보센터 사용이라는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표 소유자들은 자신의 상표가 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선등록 기간 동안에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상표를 등재하는 수수료가 너무 높게 설정되면 상표 소유자의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기구들이 정보센터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Telstra(2009.7.6)*.

IP 정보센터 – 상표 라이선싱 불필요. IP 정보센터 설립을 위해 특히 IRT 보고서에 간단히 설명된 포괄적 조건에 따라 상표를 ICANN 에 라이선싱할 필요가 없습니다(예: 로열티가 없고 서브라이선싱이 가능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IP 정보센터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obe(2009.6.25)*.

IP 정보 센터 – 운영자 자격 및 감독. IRT 는 어떤 업체가 자격이 있고 IP 정보센터 운영이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ICANN 은 이 업체에 대하여 어떤 수준의 감독을 할 것인가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dobe(2009.6.25)*. IP 정보센터 의사결정자들은 혼동하기 쉬운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의사결정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천 매뉴얼이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F. Drummond(2009.7.3)*. 운영자는 WIPO 와 동일한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 서비스 공급업체가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Regions(2009.7.3)*. 기존의 ICANN 계약 당사자들이 흥미로운 솔루션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을 IP 정보센터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제한하면 경쟁이 제한되고 우수한 해결책 개발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의 제안이 선택되면 상충되는 문제들을 그 때 취급할 수 있습니다. *EnCirca(2009.7.5)*. 어떤 업체(영리 업체일 가능성이 있음)가 저비용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준의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CADNA(2009.7.7)*, *Verizon(2009.7.7)*.

IP 정보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상표 소유자가 정보센터 소요 자금 전체를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구와 등록기관이 정보센터를 통하여 얻게 될 혜택을 감안할 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상표 소유자들에게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비용을 통지해야 합니다(URS 및 사후 위임 절차의 추정 비용 등). *WIPO AMC(2009.6.19)*, *Playboy(2009.7.6)*, *Ford 외 (2009.7.6)*. 정보센터를 사용하는 모든 지지그룹은 동일한 서비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CADNA(2009.7.7)*. 비용은 정보센터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Verizon(2009.7.7)*. IP 정보센터와 관련된 비용은 ICANN 및/또는 새 gTLD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한 상표 소유자들에게 과중하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 분담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합니다. *Adobe(2009.6.25)*, *C. Speed(2009.7.2)*. 비용은 새 gTLD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고, 새 gTLD 신청 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Unilever(2009.7.1)*. IP 정보센터 인수 비용의 일부는 새 gTLD 신청 수수료 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gions(2009.7.3)*. 브랜드 소유자의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구와 등록기관의 일부 재무적 부담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BBC(2009.7.6)*. 정보센터의 비용은 ICANN 이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수행 비용의 일부로서 새 gTLD 등록기구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Time Warner(2009.7.6)*. 대부분의 비용은 ICANN 과 gTLD 등록기구가 부담해야 하지만, COA는 IP 정보센터에서 검증 및 저장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출하는 권리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IRT 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COA(2009.7.6)*, *IPC(2009.7.6)*, *SIIA(2009.7.6)*. ICANN은 이중 등록 수수료 제도를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상표 등록 비용을 지불하고 통지 받는 비용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함). *SIIA(2009.7.6)*.

IP 정보센터 – 상표 보유자에게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AIM은 IP 정보센터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상표 보유자의 데이터 제출 비용은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이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ICANN의 신청 수수료 예산으로부터 교차 보조가 있어야 합니다. *AIM(2009.6.23)*.

IP 정보센터 / GPM – 재무 부문 포함. 재무 부문에 관한 아래 방안/조건이 IP 정보센터에 포함되어야 하고, GPM: .bank, .fin, .finance, .banc, .ins, .insurance, .broker 와 동일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Regions(2009.7.3)*.

IP 정보센터 – 검증. 검증 작업은 매년이 아닌 3년마다 수행해야 합니다. *AIM(2009.6.23)*, *Unilever(2009.7.1)*, *C. Speed(2009.7.2)*. 상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증을 2~3년마다 수행해야 합니다. *Regions(2009.7.3)*. 상표가 10년 기간 동안 등록된다는 점과 IRT 가 GPM의 유효성에 대한 사용 기준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매년 검증 방식은 철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 소유자는 IP 정보센터가 보유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F. Drummond(2009.7.3)*. 데이터 업데이트 요건을 반드시 정의해야 합니다. 상표 소유자는 상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표에 대하여 매년 일회씩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Nestle(2009.7.3)*, *MARQUES(2009.7.3)*.

IP 정보센터 – 운영자의 책임. 운영자는 보유 중인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상표의 지정 또는 포기 주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매년 재검증해야 합니다. *Com Laude(2009.7.3)*.

IP 정보센터 – 개발. 이해관계자 그룹이 공동 이득이 되는 신규 서비스를 위해 IP 정보센터에 관한 새로운 정책 개발 과정을 시작하는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남용에 관한 우려는 향후에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nCirca(2009.7.5)*.

IP 정보센터 – 수정. 참여 범위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록된 문자 상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립적이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정부 기관이나 NGO 가 관리해야 하며, 비용은 참여하는 상표 보유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IRT 가 제안한 IP 정보센터는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이것이 RPM 수립을 위한 IRT 의 자체 벤치마크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P.R. Keating(2009.7.6)*.

IP 정보센터 – 공개적 접근. IP 정보센터에 대하여 최소한 웹 기반 등록기구 whois 와 유사한 무료 공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EnCirca(2009.7.5)*.

동일한 일치의 확대 적용. 동일한 일치성의 정의는 IP 정보센터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상표의 단수 및 복수를 모두 포함하도록 확대 해석해야 합니다. *Regions(2009.7.3)*.

도메인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차상위 수준 도메인 이름을 위해 제안된 “발표 및 이의 제기” 제도. IRT 는 각 차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 전에 짧은 기간(예: 2 일) 동안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표하는 “발표 및 이의 제기”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메인 투기를 우려하는 상표 소유자는 지속적으로 신규 신청 내용을 감시하고 URS 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려대상 신청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발표 기간이 상업적 관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도메인 투기와 도메인 맛보기에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도메인 투기가 방지되고 IP 정보센터와 GPMI 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Griffith Hack(2009.7.6)*.

우선등록 프로세스에 관한 우려사항. 우선등록 프로세스 조항(23 페이지)의 표현은 관습법 국가에서 조직된 등록기구만이 관습법 상표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 Donahay(2009.7.1)*. Regions 은 새 gTLD 등록기구가 사전 실시 IP 요청 서비스를 대신하여 우선등록 프로세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등록 적격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자발적 우선등록 프로세스는 모든 신규 “개설” gTLD 를 위한 IP 요청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에 추가되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Regions(2009.7.3)*. 표준 우선등록은 RPM 에 추가되는 것으로서 RPM 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ICANN 은 등록기구가 우선등록 기간 동안 반경쟁적 가격 관행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등록기구들은 우선등록 동안에 우선등록 기간 만료 후의 등록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Verizon(2009.7.7)*. IP 정보센터에 있는 모든 상표는 새 gTLD 가 제공하는 모든 우선등록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등록할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Time Warner(2009.7.6)*. 사전 실시 우선등록에 관한 IRT 의 제안은 기존 구조에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P.R. Keating(2009.7.6)* 은 우선등록이 대안적 RPM 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방어적 등록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이윤 중심적 메커니즘입니다. *Playboy(2009.7.6)*. *Ford 외(2009.7.6)*.

사전 실시 RPM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동일한 일치”를 제외한 RPM 의 영향을 재고해야 하며, 권리 소유자들에게는 사전 실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부여해야 합니다. IP 정보센터에서 확인된 상표와 상충되는 등록은 위임 등록 또는 개인 등록(private registration) 취급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IP 정보센터에 있는 상표와 일치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자가 허위로 “선의”임을 주장하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IP 요청 서비스의 목적 중 하나가 유자격 권리 소유자에게 상표에 위협이 되는 차상위 등록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사전 실시 단계에서는 위임 또는 개인 등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 gTLD 신청 평가 과정에는 신규 등록기구가 RPM 의 상세내용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표준을 초과하고 등록기관에 실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강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Time Warner(2009.7.6)*.

사전 실시: 표준 우선등록 프로세스 및 IP 요청 서비스 – 지지함. 제안된 이들 메커니즘은 건전하고 실용적이며 다른 TLD 착수 시에 유효한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권리 보유자들은 이 사전 실시 메커니즘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NOM(2009.6.22)*. 이 두 가지 사전 실시 과정은 상표에 해당되는 문자열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상표권 보호와 제 3 자 권리 간에 효율적 균형 유지를 도모합니다. *Microsoft(2009.7.2)*, *PMI(2009.7.6)*. 표준 우선등록 프로세스의 범위와 용도의 한계를 주의하여 설정한다면 제안 내용에 장점이 있습니다. *ICA(2009.7.7)*.

IP 요청 서비스 – 지지함. 이 서비스는 최상위 도메인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IP 요청 서비스(IP Claims Service)에 관습법 권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IRT 제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기구 운영자들이 특정 상표에 충분한 관습법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PM은 등록되어 쉽게 식별 가능한 권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F. Drummond(2009.7.3)*. IP 정보센터의 상표 소유자들은 다중 워드 도메인(multi-word domain) 내에 상표 용어와 일치하는 단어가 있는지 통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 등록자는 추가적인 진술과 보증을 해야 합니다. *INTA IC(2009.7.6)*.

IP 요청 서비스 – 지지하지만 너무 제약이 많음. IP 요청 서비스는 상표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개 이상의 일반 단어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LEGO 외(2009.6.29)*. IP 요청 서비스는 “사전 실시” 기간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자신의 상표를 정보센터에 기록한 경우, 사전 실시 단계 이후에 또는 우선등록 기간 후에 도메인 이름 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기구가 해당 상표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BBC(2009.7.6)*, *Regions(2009.7.3)*.

IP 요청 서비스 – 통지가 부적절함. 통지가 권리 보호를 위한 차단 권한의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Playboy(2009.7.6)*, *Ford 외(2009.7.6)*.

IP 정보센터 – 감시 서비스. AIM은 1.3 조항에 명시된 다른 감시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지지합니다. *AIM(2009.6.23)*. IHG는 효율적 감시 서비스(Watch Service)의 수립을 지지하지만, 특정인의 상표 포함된 최상위 또는 차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 상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 과정은 상표의 잠재적 위반에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표 소유자들을 위해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IHG(2009.7.2)*. IP 정보센터는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서비스

공급업체들과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Com Laude(2009.7.3)*, IRT 는 감시 서비스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상표 소유자의 선택권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 벤더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Verizon(2009.7.7)*.

여론의 분석

상표 정보센터(IP 정보센터)

A. 조직

(i) ICANN 은 IRT 및/또는 정보센터를 설립할 권한을 어디서 얻습니까?

실행권고팀(IRT)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특정 질의가 ICANN 이 IRT 를 설립할 권리 및/또는 IRT 최종보고서의 권고안을 수행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한 질의는 gTLD 가 다른 사람의 기존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한 GNSO 권고사항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ICANN 이 GNSO 의 권고사항을 실행하고 상표 보유자들의 우려사항에 대응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초기에는 상표 보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정 권리보호메커니즘(RPM)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RPM 식별을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맡긴다고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ICANN 위원회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gTLD 등록기구 운영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범용 RPM 을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그룹을 결성하였지만 그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론이 요구하는 구체성을 달성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론은 상표 보유자 우려사항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그룹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gTLD 등록기구 운영자들에게 범용으로 적용되는 구체적 RPM 을 파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IRT 가 결성되었습니다. IRT 최종 보고서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정보센터 아이디어를 지지하였습니다. 정보센터는 표준 형식으로 된 공인 상표권 데이터베이스로서, 여기에는 등록기구가 IP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TLD 실행 동안 우선등록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gTLD 를 할당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보센터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들은 정보센터의 존재 필요성 문제가 아니라 실행 세부사항에 대하여 (모두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 중 하나는 조직의 명칭, 즉 명칭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보센터가 상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취급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IP 정보센터(IP Clearinghouse)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이 상표 정보센터(Trademark Clearinghouse)입니다. 하지만 문서에서 그에 관한 토론과 질문의 목적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보센터("Clearinghouse")라고 언급합니다.

GNSO 가 고려할 임시 실행 해결책으로서 정보센터가 제안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행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추가적 정책 개발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GNSO 가 이 분야를 담당합니다. GNSO 에게는 이를 임시 해결책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정보센터 이행과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대체 해결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ii) 정보센터가 ICANN 과는 별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ICANN 이 정보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업체가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ICANN 은 정보센터를 지원할 것이고 그 활용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센터는 ICANN 과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ICANN 이 운영해서도 안되며 ICANN 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보센터는 고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ICANN 은 등록기구 및 등록기관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조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권리 보호 목표가 올바르게 달성되도록 일부 감독 또는 품질 보증 역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센터 운영 업체를 지정할 최종 권한은 ICANN 이 보유하겠지만, 업체 선정과 유지 업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ICANN 은 정보센터의 일상적 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든지 단지 하나의 정보센터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ICANN 과 정보센터 간에 일정 형태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필요하거나 원활 경우 나중에 다른 업체에 업무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계약은 필요 시 원활한 양도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에스크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고 독점적 소스 공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데이터 검증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한 분리 방식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단순히 정보센터에 포함되는 상표의 수를 늘리기 위해 검증 업체가 받는 정보센터 입력 승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역할의 분리 방안이 채택되면 분리 세부사항이 데이터 검증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간의 최종 계약에 명시될 것입니다.

IRT 최종 보고서에 대한 여론은 또한 공정한 경쟁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리 및 검증 업무 과정을 모두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수의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와 서비스 공급업체가 데이터 검증 업체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한 업체가 정보센터 관리업체로 그리고 또 하나의 업체가 정보센터에 입력되는 데이터 검증 업체로 선정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계약은 각 계약 기간마다 평가할 것입니다.

(iii) 정보센터 서비스 공급업체에게는 어떤 수행 기준이 요구될까요?

제시된 의견들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수행할 데이터 검증 및 관리 업무가 최고 수준의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행 기준이 등록

프로세스의 무결성이나 적시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구와 등록기관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기준은 선정된 서비스 공급업체가 다음 사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일부 기능이라고 믿습니다.

- (a) 연중 무휴 24 시간 액세스가 가능해야 함
 - (b)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며 보안이 유지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c)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이 다양한 출처에서 여러 언어로 된 많은 상표를 수용하고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전세계에서 액세스 가능하고 확장 가능해야 함
 - (d) 공급업체는 다양한 관련 상표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또는 검증에서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함
 - (e) 등록기구/등록기관과 상호 작용에 관련된 요건을 비롯하여 수행 요건이 도메인 이름 등록 적시성이나 등록기구/등록기관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 (iv) 정보센터가 한 개 있어야 할까요 여러 개 있어야 할까요?

지역별로 다른 정보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지역별 정보센터가 있으면 데이터 검증 책임을 지원할 수 있고 독점적 소스 공급업체와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 정보센터를 두면 해당 지역의 문화 관습과 상표법에 대한 지식, 공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 상표국에 대한 접근성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이점을 능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센터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상표 소유권 정보를 저장하고 gTLD 개시 전에 운영자가 채택하는 우선등록 및/또는 상표 감시 요청 서비스 기간 동안 이 정보를 등록자 및 gTLD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수를 늘리면 여러 지역 조직에서 운영의 능률성과 비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보센터 분리 역시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법원 소송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단일 조직을 통하여 정보센터의 핵심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표 관습에 대한 지식, 지역 상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문화적으로 중요한 관련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데이터 검증 계약을 맺는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필요한 수행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일 업체가 지역 사무소를 둘 경우의 이점은 별개의 지역 정보센터들을 설립할 경우에 예상되는 난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B. 데이터 남용 방지를 위해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합니까?

일부 사람들은 상표 데이터를 한 곳의 저장소에 집중시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센터는 그러한 남용 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될 명확한

요소는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즉 상표 소유자는 정보센터의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관리자나 검증자가 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공급업체가 데이터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서비스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 문제는 데이터가 일정 형태의 공개 정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ICANN은 완전한 투명성을 이해하고 지원하지만, 정보센터의 데이터를 완전히 검색 가능하게 하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경쟁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등록하려고 선택한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검색에서 특정 업체가 검증하여 정보센터에 포함시킨 상표의 총계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C. 정보센터에는 어떤 상표 유형이 포함되고, 포함시킬 경우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정보센터에 등록해도 상표권이 생성되거나 확대되지 않으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권리의 제한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센터는 단순히 정보 저장소이므로 상표 보유자로부터 사용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센터 관리자에게 상표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센터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등록된 상표 및 등록되지 않은 상표만 정보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임의의 단어나 명칭의 등록을 허용하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성과 비용 경제성의 두 가지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 확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모니터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검증된 상표 외에 모든 것의 등록을 허용하는 과정은 남용 및 오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센터의 취급 범위는 상표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명확한 입력 프로세스와 유효한 상표권으로 입력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RPM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의 경우 초기 검증에 일부 난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은 초기에 예상되는 어려움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의도하는 바는 권리가 지속적 사용에 귀속되므로 "관습법"상의 상표 소유권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미등록 상표 보유자가 위임 이후 이의 신청 제기 또는 UDRP 처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이를 동일한 권리 보유자들에게 정보센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합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보안 조치로서, 정보센터에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상표권자는 데이터 검증을 정기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일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다른 일부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결정은 아직 심의 중이며 정보센터가 상표 검증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의견은 정보센터와 같은 수단이 권리 판정을 하거나 권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보센터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보센터는 제한된 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거기에 포함되는 상표가 상표 보유자에게 어떠한 추가적 권리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경을 가할 수 있으므로 채택 전에 동일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D. 정보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정보센터가 제공할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보센터에 상표를 등록하는 비용은 어떤 당사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여러 당사자들 간에 비용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ICANN 이 그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보센터 비용의 대부분은 검증 및 gTLD 개시 동안에 발생하는 증분 비용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검증 비용은 정보센터에 포함시키기 위해 상표를 제출하는 상표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gTLD 사전 실시 비용(우선등록 및 상표 감시 서비스의 제공 비용)은 각 실시 동안에 발생하며 이는 RPM으로서 우선등록 또는 상표 감시 서비스를 실행하는 gTLD 등록기구 운영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수료 구조는 많은 gTLD 가 정보센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환경에서 충분 노력과 수수료를 부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gTLD 등록기구는 실시 시점에 부과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 수수료에서 그 비용을 회수할 것이며, 이는 한 의견과는 반대로 등록기구 운영자가 정할 것이며, ICANN 이 이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센터 우선등록 및 상표 감시 서비스 제공은 가치 확보 즉 저비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 입찰에 부쳐질 것입니다. 물론 잠재적 정보 센터 공급업체와의 토론을 통하여 자금 지원 및 가격 구조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E. 사전 실시 우선등록 및 상표 요청

(i) 등록기구 운영자는 우선등록(sunrise) 및 상표 사전 실시 요청 서비스(pre-launch trademark claims service)를 채택해야 하고 정보센터는 이를 서비스를 위해 다른 감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합니까?

RPM 이 많을수록 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등록기구 운영자들에게는 어느 RPM 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해서 일부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센터는 사전 실시 우선등록 및 상표 요청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그 목적은 상표권자들을 위해 그러한 사전 실시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gTLD 가 채택하는 모든 우선등록 및 사전 실시 요청 서비스에 대하여 관심 있는 상표권자들이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 gTLD 의 수에 따라 이것이 부담스럽거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등록기구 운영자들은 시장에 있는 기존 또는 향후 발생할 다른 정보센터나 감시 요청 서비스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실행될 경우 그들은 최소한 그 목적으로 여기 고안된 정보센터를 사용하도록 요구 받을 것입니다.

(ii) 상표 보유자가 사전 실시 서비스 동안 통지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통지 대상이 동일한 상표 이상으로 확대됩니까?

제안에는 상표 보유자에 대한 통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통지는 등록자에게 정보센터에 동일한 상표가 존재함을 알리는 통지를 하고 선의의 등록에 대한 특정 진술을 한 후 이를 등록을 진행한 후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상표 보유자에 대한 통지 과정은 등록 차단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인위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실시 요청 통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 대상이 동일한 상표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의견 요약

세계보호상표목록(GPML)

시드니

개요

GPML 기준은 숫자이고 완전히 객관적이며, 적격성 요구사항은 매우 높고 엄격하게 수립될 것입니다. IRT 보고서에서 등록을 시작하고 새로운 신청을 시작할 일자로 계획한 2008년 11월 1일과 관련하여 특정 기준 요건 및 이러한 일자들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GPML은 두 가지 수준에서 운영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상표가 GPML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하여 최상위 보호와 차상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의 숫자 결여와 관련하여 GPML의 엄격한 제한 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해 ICANN 직원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M. Wong*.

최상위 보호

최상위 수준을 위해 새 gTLD를 신청할 때 분석하는 것은 GPML에 있는 실제 상표와 동일하게 일치하는지 또는 혼동스러운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평가 후, 신청한 gTLD가 GPML에 있는 실제 상표와 동일하게 일치하거나 혼동스럽게 유사하다고 밝혀질 경우 재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IRT 보고서에는 초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등록자들에게 재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M. Wong*. 최상위 수준에서는 GPML에 등재된 상표를 가진 업체에게는 DAG 1 및 DAG 2에서 ICANN이 자신과 계약 업체들인 등록기구들을 위해 보유한 것과 동일한 기회만 부여됩니다. 현행 초기 평가는 기존 TLD 및 예약된 이름을 대상으로만 문자열 혼란 유무를 평가하므로 우리는 단순히 내용을 덧붙이는 것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K. Rosette*. 최상위 수준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에 정말로 큰 망치가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6 달러짜리 도메인 투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185,000 달러 사건에 직면해야 합니다. *A. Schubert*. IRT 보고서에는 문제와 이슈가 최상위 수준이 아닌 차상위 수준에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185,000 달러를 가지고 투기를 하여 돈을 잃을 도메인 투기자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권리 보유 사실을 입증하고 나서 185,000 달러를 결제하고 자신의 TLD를 운영하기 위해 초기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최상위 수준에서도 그것이 다시 풀로 돌아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J.S. Evans*.

차상위 보호

차상위 수준의 경우, 주된 차이점은 GPML에 있는 실제 상표와 차상위 수준에서 신청하는 것과의 일치 확인작업이 동일한 일치(identical match) 여부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그 시점에 항소를 포함한 분쟁 해결 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나 이권(예를 들면 일반적 사용 또는 허용 가능한 제품 설명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M. Wong.*

GPML 목록에 등재된 경우의 효과

GPML에 등재되더라도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자동으로 권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GPML은 상표 소유자에게 우선권이나 우선등록 시의 기타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M. Wong.* GPML이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위축 효과를 보여주는 관리 측면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A. Schubert.*

상표 소유자와의 협상

우리가 지리적 명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왜 신청자가 상표 소유자에게 가서 비거절 문서(letter of no rejection) 협상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약간 과잉 조치이며, 보호 방식은 최소한 당사자들 간의 협상은 허용하고 신청을 자동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GPML은 폐기해야 함 – 득보다 실이 많음

eNOM은 GPML에 반대합니다. 실제 목록 내용을 안출하는 것은 복잡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고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목록의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제한 수치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누가 다른 사항을 결정할지에 대하여 아직 모릅니다. 강력한 상표를 가지고 있고 목록에 등재하고 싶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정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구 국가에 비하여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제한치를 낮추자는 로비 활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GPML 목록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습니다. 최상위 수준에서는 이 목록이 DAG 법적 이의 제기 과정이 이미 제공하는 것에 아무런 부가가치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은 차상위 수준에서 미미한 이점만 더해줄 뿐입니다. 목록에 등재된다고 해서 우선등록 시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R. Tindal.* 비상업 사용자 지지그룹은 GPML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기존 법적 권리를 과중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K. Kleiman.* GPML은 나머지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갑니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 집단이 제안된 많은 다른 신규 RPM의 도입을 고려하면서 GPML에 참여할 것입니다. *P. Stahura.*

대안: UDRP 제한치 문제 – 사실상 GPML

도메인 투기의 해악에 대처할 새로운 방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더 간단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 30,000 UDRP 건이 있었고, 상표권을 보유하고 UDRP 건에서 찾을 대상이 아닌 예상 참가자가 GPML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실질적 GPML입니다. UDRP는 소송에 대한 탁월한 대안입니다. 새 TLD를 등록하기 전에 (그리고 우선등록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기본 상표나 도메인이 기존 UDRP 결정 내용의 주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럴 경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일부 잠재적 해악이 발생한 이후가 아닌 등록 전에 UDRP 처리 절차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P. Argy.*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들 언어가 어떻게 기준을 충족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GPML을 위해 단일 중앙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를 만드는 대신에 서비스를 여러 언어(.asia)로 분할함으로써 그것을 수행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GPML – 전세계적 합의

엄격한 GPML 기준이 어떻게 전세계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국가들마다 상이한 사법권과, 다른 보호 수단이 있는 상이한 상표법이 있습니다. *G. Yuanyuan*. 상이한 국내법과 사법권과 관련하여 GPML은 일부 기본적 요건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효력이 있는 상표 등록입니다. 이는 IP 정보센터에 의해 검증될 것입니다. 국가 y 의 상표보다 의심스러운 국가 x 의 상표와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추가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귀하가 필요한 수의 국가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ICANN 의 모든 다섯 개 지역에 걸쳐있다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M. Wong*.

뉴욕

세계보호상표목록

GPML은 ICANN의 사명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없습니다. GPML은 용도나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들 상표를 재화나 서비스를 위한 상표가 아닌 모든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에 대하여 보호되는 문자열로서 보호합니다. 이 목록은 도메인 이름 디렉토리에서 apple, sun, time, people 과 같은 기본 단어를 제거할 것입니다. *C. Climen*. 우리는 GPML을 좋아하지 않지만 WIPO가 만든다면 목록을 볼 것입니다. *A. Van Couvering*.

세계보호상표목록

GPML은 유명한 상표 목록이 아니고 기준에 근거한 목록,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걸쳐 국가적 효력을 갖는 상표 등록 건수에 관한 매우 엄격한 수치입니다. 문제가 되는 모든 등록은 시작일 이전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임의 시점에 최상위 문자열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은 GPML에 있는 상표들과 비교됩니다. 동일하게 일치하는 상표가 있을 경우 해당 신청은 초기에 좌절됩니다. 재심의는 가능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와 혼동을 야기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특정한 합법적 목적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차상위에서도 초기에 차단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청자는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UDRP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표준을 채택하도록 권고됩니다. 이 과정은 브랜드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단일 상표를 방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피하고 소비자들이 일부 실용적 공간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브랜드를 GPML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러분은 법적 이의 제기 과정을 위해 ‘초안 신청자 가이드북’에서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F. Vayra*.

런던

세계보호상표목록(GPML)

Demand Media는 GPML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른 RPM이 GPML의 목적을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GPML은 생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인데 그 이유는 목록 등재 기준과 제한치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이며 등재 가능 대상에 관하여 상표 보유자와 국가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GPML은 과정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즉 GPML은 기존 초안 신청자 가이드북에 있는 것 이상으로 최상위 수준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차상위 수준에서는 GPML에 등재하면 극히 미미하고 제한적인 혜택만 제공합니다. 이 목록이 매우 유명한 브랜드를 포함한다면 그것들은 각각 TLD의 차상위 수준에서 단 한 개의 정확한 일치 보호만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GPML은 RPM이 기존의 법적 권리를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IRT 지침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 Tindal*.

세계보호상표목록

GPMI 은 예약 목록과 유사하고 유명 상표 목록이 아닙니다. 이는 엄격한 기준 위에 마련됩니다. 브랜드 소유자는 국가 효력을 갖는 상표에 대하여 특정 개수의 지역을 갖게 되고, 그러한 등록은 특정 일자 이전에 실시해야 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상표를 주된 온라인 존재로 갖는다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elta 는 상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delta.com 이 필요할 것입니다. GPMI 는 브랜드 소유자가 초안 신청자 가이드북에서 이미 확보한 법적 권리 이의 제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 업체가 GPMI 에 상표를 등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과정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GPMI 는 최상위 보호책을 갖고 있으며, 특정 ICANN 조건을 위해 DAG 에 현재 제안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GPMI 에 있는 문자열과 비교되어 정확한 일치 항목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일치 항목이 있다면 초기에 거절되고, 재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재심의는 새 정보를 제출할 기회가 아니고 자신이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용어가 비교대상과 혼동스럽지 않음을 소명하는 기회입니다. 차상위 수준에서는 정확한 일치가 있을 경우 초기 차단만되지만, 합법적 권리를 입증하기 위한 재심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이때 4C 에 따라 현재 UDPR 에서 적용되는 표준이 사용됨). F. Vayra.

세계보호상표목록

WIPO 는 IRT 의 GPMI 권고안을 계약에 기반한 기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목록 유형으로 의도되었으며, 따라서 유명한 상표와 관련된 WIPO 의 작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은주.

IP 정보센터 – 제안 내용이 상표 소유자에게 부담스러움. 공개된 출처에서 얻는 상표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지하는 것은 IP 정보센터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IP 정보센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상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Adobe(2009.6.25).

IRT 재무 보고 여론

GPMI – 지지함. GPMI 는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상표 보호와 제 3 자가 GPMI 에 있는 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 간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 줍니다. Microsoft(2009.7.2). AT&T(2009.7.2). Nestle(2009.7.3). Yahoo! 는 GPMI 를 지지하지만, 이것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ICANN 은 DAG 를 수정하여 이의 신청 과정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된 문자열을 초기에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Yahoo! (2009.7.6). 포함 표준은 수준이 높아야 하고 국가 법률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개념이 아닌 객관적 기준(등록 수)을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MARQUES(2009.7.3).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예: 185 개 상표 등록기구 중에서 140 개 이상 등록). 이 경우라면 250 명 이상의 상표 소유자가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GPMI 는 현실적으로 등록기구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예약 목록(Reserved Lists)보다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Com Laude(2009.7.3). COA(2009.7.6)도 참조. IPC 는 원칙적으로 GPMI 를 지지합니다. 새 gTLD 신청자에게는 더 폭넓은 예약된 이름 목록을 채택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이것이 모든 새 gTLD 실시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IPC(2009.7.6).

GPMI – 관할 지역 충돌, 차상위 수준 우려사항. GPMI 소유자가 해당 특정 관할 지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GPMI 이 한 지역의 합법적 상표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잠재적 충돌의 해결 비용이 합법적 상표 소유자들에게 과중한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표 소유자는 차상위 수준에서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차상위 수준에서는 더 제한적인 테스트만 제공, 즉 혼동스러운 유사성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일치만을 확인합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F. Drummond(2009.7.3)*.

GPM – 기준. 핵심 문제는 상표에 GPM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GPM 자격이 있는 상표는 소수이겠지만, GPM 목록과 다른 널리 통용되는 브랜드 인지도 및 가치 연구내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전체 프로젝트에서 브랜드 소유자의 명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Pattishall McAuliffe(2009.6.17)*, *Telstra(2009.7.6)*. 모든 GPM은 ICANN의 새 gTLD 프로그램의 특수한 맥락에서 적절한 계약상 확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GPM에 등재한다고 해서 널리 행해지는 유사이름 등록 행위가 방지되지는 않습니다. *WIPO AMC(2009.6.19)*. GPM의 무결성 요구사항은 가장 일반적인 도메인 투기-유사이름 등록 형태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습니다. *S. Donahay(2009.7.1)*.

GPM 자격 요건 제한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한 가지 옵션으로서 동일한 단어 상표 등록 100 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 이전에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현행 등록내역을 수용해야 합니다. *AIM(2009.6.23)*. GPM이 유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IRT는 이 목록 등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상표가 어떻게 등재 자격을 얻느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또한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전체 상표 포트폴리오 이행에 필요한 보호책을 제공하면서 GPM을 동적으로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GPM에서 일자 기준(2008년 11월 1일 이전)을 없애야 합니다. *Adobe(2009.6.25)*.

GPM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Unilever(2009.7.1)*. 목표는 합법적 권리가 있을 경우 이 권리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보호 받는” 모든 상표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제도에 비하여 특정 지역이나 법적 제도를 선호하는 기준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교역 시장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전적으로 상표가 등록된 국가의 수(국가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준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INTA IC(2009.7.6)*. GPM의 제한 내용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국가에 상이한 업체 명의로 상표 신청을 하는 일부 글로벌 브랜드 소유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 양도를 등재하는 데에 수개월/수년이 소요되므로 취득한 브랜드가 이전 소유자 명의로 당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이들 회사들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GPM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C. Speed(2009.7.2)*.

GPM 제한 수준이 너무 높아서 많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표 소유자들을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국가 효력이 있는 등록”의 적정 수에 관하여 ICANN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IHG(2009.7.2)*. 진입 기준은 세계적 보호를 받고 있는 광범위한 브랜드를 수용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MPAA(2009.7.6)*, *BBC(2009.7.6)*. 단순한 등록 건수가 글로벌 상표인지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UBS(2009.7.6)*. 최소한 세 곳의 글로벌 지역에 있는 총 40개 국가 이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GPM 지위를 얻기 위한 적절한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특정 등록 건수를 요구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연구가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널리 등록되어 있고 세 곳의 ICANN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으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GPM 기준은 도메인 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는 유명 브랜드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직 완전히 등록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상표를 일괄

배제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Time Warner(2009.7.6)*. 최종 보고서는 기준에 관한 전반적 지침만 제공하였습니다. 분석 데이터 없이는 GPM 지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하지만 과도하게 엄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COA(2009.7.6)*, *Yahoo!(2009.7.6)*. 적절한 제한 기준으로서 ICANN 의 5 개 지역 중에서 4 개 지역에 걸쳐 최소한 30 개 국가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SIIA(2009.7.6)*. GPML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등록 건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Verizon(2009.7.7)*.

GPM의 확대. 주된 상표가 GPM 지위를 얻기 위한 적격으로 판정되면 GPM은 “관련 식별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표가 포함된 문자열까지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GPM 보호는 강력한 지역 존재감을 갖는 상표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즉 ICANN 의 전체 다섯 지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 *AIM(2009.6.23)*. 제안 내용이 브랜드의 공통적 확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dobe(2009.6.25)*. 도메인 이름 차단 가능성은 GPM이 포함된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일반 단어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에까지 확대될 때에만 GPM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GPM 소유자들이 직면하는 종류의 남용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LEGO 외(2009.6.29)*, *Unilever(2009.7.1)*. 대부분의 침해 사례는 동일한 상표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에 비변별적 요소 또는 철자 오류를 더하는 경우입니다. *C. Speed(2009.7.2)*. “동일한 일치”의 정의를 확대해도 상표에 단어나 구를 추가하는 방식의 남용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IRT*는 지명을 기준 상표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정의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IHG(2009.7.2)*. 정확한 일치 건 이외에도 대응하도록 보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MPAA(2009.7.6)*, *Time Warner(2009.7.6)*. DNS에서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널리 행해진 체계적 남용의 대상이 되었던 상표들은 GPM에 포함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INTA IC(2009.7.6)*. 제안된 바와 같이 GPM은 높은 가치를 지닌 많은 상표들을 무방비 상태로 둘 것입니다. GPM을 재평가하고, 세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상에 존재 여부를 조율하여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상표를 보호하도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Playboy(2009.7.6)*. GPM은 더 많은 상표 소유자를 수용하고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GPM 상표 등록을 통해서만 정확히 일치되는 상표 등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브랜드 소유자들이 자신 상표의 다양한 변종들을 선제적으로 등록할 것입니다. 새 상표를 목록에 등재하는 방법은 GPM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CADNA(2009.7.7)*. GPM 목록 확장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쇄상 변종을 포함해서는 안 되지만 GPM과 동시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는 포함해야 합니다. 한개의 정확한 상표로 좁게 해석할 경우, 상표 소유자들은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새 TLD에서 자신의 다양한 상표 변종을 선제적으로 등록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집행 노력 시에 많은 자금을 지출할 것입니다. *Verizon(2009.7.7)*.

GPM – 특수한 법적 상표 보호 인정. 상표의 진정한 세계적 범위와 역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법적 보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IOC(2009.7.6)*.

GPM – 유사이름 등록. GPM은 명백한 유사이름 등록(typosquatting)일 경우 새 gTLD 와 차상위 도메인의 등록을 초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IOC(2009.7.6)*.

GPM – 결합 상표. 결합 상표의 경우, GPM을 구성하는 텍스트 요소를 상표 보호에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Nestle(2009.7.3)*, *MARQUES(2009.7.3)*.

GPM – 이의 없음. 상표 소유자의 공식항변에 의해 GPM 지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Time Warner(2009.7.6)*.

GPM – 재심의. GPM 소유자가 재심의 과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Time Warner(2009.7.6)*.

GPM – 최상위 수준 및 차상위 수준의 우려사항. 상표 등록 발행일은 최상위 도메인의 초기 등록을 위해 중요한 특징입니다. gTLD 가 활성화된 후에 “세계적 보호”를 받게 될 상표와 관련하여 차상위 수준 도메인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Nestle(2009.7.3)*, *MARQUES(2009.7.3)*. gTLD 에 추가 사항과 함께 GPM 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gTLD 는 GPM 과 혼동스럽게 유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GPM 자격이 없는 상표의 최상위 수준에서는 보호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BBC(2009.7.6)*.

차상위 RPM 우려사항. 신청한 차상위 수준 도메인이 GPM 과 동일하거나 혼동스럽게 유사할 경우 이 도메인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C. Speed(2009.7.2)*. 차상위 수준에서 등록을 차단하는 기능은 동일한 일치 건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BBC(2009.7.6)*, *Time Warner(2009.7.6)*. 차상위 도메인 RPM 과 관련하여 상표 보호에 적용되는 단일 규칙이 전체 gTLD 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FA(2009.7.6)*. 주된 온라인 존재를 위한 차상위 도메인이 상표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은 합리적 표준으로 보입니다. *INTA IC(2009.7.6)*. IRT 최종 보고서는 제시된 부정한 보증을 위반했다는 주장만으로 상표 보유자가 도메인 이름을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상충된 표준을 만듭니다. *P.R. Keating(2009.7.6)*. IRT 의 차상위 수준 메커니즘은 불충분합니다. 그럴듯한 합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명백한 상표 남용 건의 경우, 상표가 GPM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메인 등록 과정에서 차단되어야 합니다. 차단 권리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또는 합법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경우 모든 상표 소유자는 새 gTLD 에서 도메인 이름의 초기 차단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IRT 의 RPM(IP 정보센터, IP 요청 서비스, 우선등록 또는 URS) 중 어떤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이들은 각각 이행 전에 수정, 변경되어야 합니다. *Playboy(2009.7.6)*, *Ford 외(2009.7.6)*.

GPM – 추가 연구. GPM 의 제한 내용이 매우 높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ICANN 의 전체 다섯 개 지역에 등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물론 이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Unilever(2009.7.1)*. UDRP 처리 절차에서 “GPM 유형” 대비 비 GPM 상표 취급 비율을 파악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비 GPM 상표와 관련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된 GPM 의 실질적 영향과 비 GPM 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책을 제공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상표 포트폴리오가 (2008년 11월 1일 이후) 진정한 세계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취급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Place(2009.7.6)*. 투기 방지를 위해 등록 기한이 있어야 하며, 새 GPM 은 나중에 목록에 추가하는 가능성도 허용해야 합니다. *INTA IC(2009.7.6)*. GPM 은 2008년 11월 1일 이전에 존재하거나 자격을 얻은 상표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GPM 이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IRT 는 향후 등록을 처리할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Verizon(2009.7.7)*.

목록 등재 기준과 GPM 지위가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는 차상위 등록에 미치는 GPML의 영향 측면에서 GPML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도메인 투기 위험의 일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또한 GPML 지위는 유사이름 등록 및 GPM과 설명 용어를 결합한 방식의 등록을 방지하는 대책도 일부 제공해야 합니다. *Time Warner(2009.7.6)*.

GPML – 지역. GPML 신청자가 상표의 글로벌 일관성을 보여줄 경우, IRT는 5 개 지역 중에서 4 개 지역에 등록한 것도 허용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강제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정 위치에 얹매여 있었던 기업들도 자신의 특수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GPML에 등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Baker Hostetler(2009.7.6)*.

GPML – 합법적 권리 보유자의 상충된 신청. 그러한 경우, 합법적 권리 보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유로 인하여 전체 다섯 지역에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gTLD 부여 과정에서 상표권과 기타 상황적 우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Baker Hostetler(2009.7.6)*.

GPML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GPML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적” 상표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도메인 투기꾼이 의심 없이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PML 제안 내용을 표로 만들려면 새 TLD에 연결된 새로운 제도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적인 ICANN 절차처럼 보여야 합니다. *Wrays(2009.7.6)*. GPML이 극히 일부의 상표 소유자들만 보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보호책이 아닙니다. **PMI(2009.7.6).** 제안된 GPML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상표법의 적절한 기반이 부족하므로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ICANN에게 국제 조약 기구/다국적 입법부와 같은 부적절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ICA(2009.7.7).** GPML은 도메인 이름을 특정 상표 등록자 범주에게 할당하며, GPML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국가들에서도 등록자들로부터 등록 기회를 박탈합니다. **ALAC(2009.7.7).**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상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역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상이한 업체들이 동일한 이름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다른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할 경우 상표 등급 규정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이며 다수의 국가가 관여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선착순 방식인가요?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독립적 학술 작업을 의뢰하여 개발도상 국가와 언어 문제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V. McEvedy(2009.7.7)*.

GPM 방어적 신청. 또한 방어적 신청을 위한 추진 가속화 제도(fast track system)를 GPM 등록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TLD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사용 기준은 포기해야 하며, 수수료는 축소하고 TLD는 부여되지만 영구히 “보류” 상태로 둬야 합니다. *AIM(2009.6.23)*.

GPMI 은 폐기해야 함. GPMI 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이행이 복잡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적 이의 신청 제도 때문에 최상위 수준에서는 더 이상의 이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차상위 수준에서 극히 제한적인 이득만 제공할 것입니다(IRT 의 우선등록 권고안 채택을 가정할 경우). GPMI 는 또한 기존 권리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법적 권리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IRT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GPMI 는 새로운 ICANN 합의 정책이 있더라도 기존 gTLD 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ENOM(2009.6.22). M. Neylon(2009.7.6). M. Berkens(2009.7.6). GPMI 는 비교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복잡한 해결책으로서 불필요합니다. EFA(2009.7.6). GPMI 는 남용의 소지가 많고 상표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RPM 수립에 관한 IRT 의 자체 기준을 위반합니다. P.R. Keating(2009.7.6). DNS(2009.7.6). GPMI 는 여러 근거에서 볼 때 결함이 매우 많으며 (예를 들어, 상표법의 범위를 초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혁신을 억제함) ICANN 의 사명 및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계속 진행할 경우 새 gTLD 의 이행을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킬 것입니다. NCUC(2009.7.7).

여론의 분석

세계보호상표목록

정보센터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세계보호상표목록(GPMI)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GPMI 등재 대상은 최상위 및 차상위 수준에서 특정 등록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표들로 한정됩니다. GPMI 에 등재된 상표에는 IRT 가 계획하는 다른 RPM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가장 인지도가 높고 매우 높은 표준을 충족하는 특정 상표들만 목록에 등재하고 TLD 개시 전/후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GPMI 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GPMI 등재 제한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결국 이 특정 RPM 에 대한 의견은 GPMI 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보센터 관리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여론은 GPMI 이 유사한 상황의 신청자들을 달리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권리를 확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GPMI 은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된 GPMI 등재 표준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용된 표준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비평에 의하면 응집력 있는 표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GPMI 이 어떤 지역의 상표법에서도 인정된 적이 없는 일종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잘 알려진” 상표 표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또한 표준이 최소한 한 관할 구역의 법률에 명시된 “유명” 상표 기준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참조: 15 미국 법령 § 1125. 대신에 GPMI 이 대부분의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를 반드시 포괄하지 않았던 일종의 “초신성”을 창출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은 해당 기준을 수립할 수 없으면 gTLD 시스템과 RPM 에 대한 상표 보유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명성의 등급이 확실히 존재하는 상표들의 경우에는 GPML이 상표 소유자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초신성”의 지위가 상표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일반 단어를 공개 도메인에서 제거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PML은 설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나아가 비교적 소수의 이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상위 및 차상위 수준에서 극히 미미한 이득만 제공합니다.

GPML을 정의했던 방식과 상표에 대한 제한적 보호 기능 때문에 GPML이 유사이름 등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의견들은 금지 행위를 정확한 일치 이외의 상황에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GPML이 문제 소지가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처하거나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GPML이 상표권의 확대, 즉 등록 관할 지역에서 상표권을 확대하고, 인터넷의 세계적 특성을 감안할 때 등록되지 않은 관할 지역에서도 권리 생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GPML을 실행한다면 한 유형의 상표 보유자를 다른 보유자와 차별 대우(예를 들면 한 상표 보유자는 GPML에 등재되고 다른 보유자는 그렇지 못한 상황)하는 것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차별 잠재성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상표 보유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